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8
----------	-----

2016년 3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오경환 의원 외 10명
- 나. 발 의 일 : 2015년 11월 13일
- 다. 회 부 일 : 2015년 11월 17일
- 라. 상 정 일 : 제26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3월 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오경환 의원)

가. 제안 이유

- 1)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 2) 협의회 회의 의결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1. 20.~ 11. 27.)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 구성인원을 확대(23명 이내 → 30명 이내)하고(안 제3조제1항), 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며(안 제3조제3항), 협의회 주요 의결사항을 보완(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통합방위사태 '선포' → '선포·해제')하려는(안 제8조제3항) 것임.
-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통합방위 대비책,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안 제8조제3항은 현행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조례의 기준”을 반영하여 서울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현행 및 개정안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비교〉

현 행	개 정 안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교육감	2. 서울특별시 교육감
3. 수도권방위사령관	3. 수도권방위사령관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5. 서울지방 경찰청장	5. 서울지방 경찰청장
6. 국가정보원 제2국장	6. 국가정보원 제2국장
7. 서울지방 병무청장	7. 서울지방국세청장
8. 서울지방 교정청장	8.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9. 서울지구 기무부대장	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10. 서울지방 국세청장	10. 서울시 비상기획관
11. 서울지방 보훈청장	11. 서울지방병무청장
12. 서울 체신청장	12. 서울지방보훈청장
13.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장	13. 서울지방교정청장
14. 연합뉴스 사장	14. 서울지방우정청장
15. 서울특별시 여성단체 연합회장	15. 서울지구기무부대장
1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1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17.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장	17.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18. KT서울북부법인사업단장	
19.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0.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1.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 협의회 구성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있었던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장, 연합뉴스 사장, 서울특별시 여성단체 연합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장, KT서울북부법인사업단장,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제외하고,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및 소방재난본부장을 추가하고자 하고 있음.

※ 개정 : 서울 체신청장 → 서울지방우정청장

- 통합방위협의회에 서울시 안전 및 소방 관련 본부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서울시 행정의 유기적인 통합과 행정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는 하나, 최근 협치가 강조되는 등 서울 시정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 전시대비 등에 있어서도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민간 위원 축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 수를 확대(23명 이내→30명 이내)할 뿐만 아니라 안 제3조제3항제17호(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에 따라 추가 위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 등 민간의 자원봉사영역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의 추가 구성 방안 마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안 제8조제3항은 협의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현행 통합방위사태 ‘선포’뿐만 아니라 ‘해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제3호의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경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8
----------	-----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13일

발 의 자 : 오경환, 권미경, 김영한,
김용석(도봉),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박양숙,
신건택, 최판술, 최호정
의원(11명)

1. 제안이유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나. 협의회 회의 의결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1명, 부의장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 1.~ 6. (현행과 같음)
 7. 서울지방국세청장
 8.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10. 서울시 비상기획관
 11. 서울지방병무청장
 12. 서울지방보훈청장
 13. 서울지방교정청장
 14. 서울지방우정청장
 15. 서울지구기무부대장
 1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17.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제3항제18호~제2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선포 및 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1명, 부의장1명을 포함한 <u>23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p> <p>1.~ 6. <생략></p> <p><u>7. 서울지방병무청장</u></p> <p><u>8. 서울지방교정청장</u></p> <p><u>9. 서울지구기무부대장</u></p> <p><u>10. 서울지방국세청장</u></p> <p><u>11. 서울지방보훈청장</u></p> <p><u>12. 서울지방우정청장</u></p> <p><u>13.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장</u></p> <p><u>14. 연합뉴스사장</u></p> <p><u>15.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장</u></p> <p><u>16.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장</u></p> <p><u>17. 한국자유총연맹서울지부장</u></p> <p><u>18.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u></p> <p><u>19. 한국전력공사서울지역본부장</u></p> <p><u>20. 한국가스공사서울지역본부장</u></p> <p><u>21.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u></p>	<p>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1명, 부의장1명을 포함한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p> <p>1.~ 6. <현행과 같음></p> <p><u>7. 서울지방국세청장</u></p> <p><u>8.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u></p> <p><u>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u></p> <p><u>10. 서울시 비상기획관</u></p> <p><u>11. 서울지방병무청장</u></p> <p><u>12. 서울지방보훈청장</u></p> <p><u>13. 서울지방교정청장</u></p> <p><u>14. 서울지방우정청장</u></p> <p><u>15. 서울지구기무부대장</u></p> <p><u>1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u></p> <p><u>17. 그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u></p> <p><삭 제></p>

제8조(회의 등)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
만, 통합방위사태선포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등)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
만, 통합방위사태선포 및 해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오 경 환